

다) 학령(총 수학연수) 가감 산정(영 별표23)

(1) 산정 공식

(총 수학연수-16) + 가산연수

(2) 학령(총 수학연수)

(가) 개념: 경력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(年數)

※ 학력: 학교를 다닌 경력.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은 학령 가감의 대상이 되지 않음

(나) 학령 가감: 영 [별표23]에 따라, 영 [별표11]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교원 등의
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

(다) 학령 계산방법

[학령 계산시 주의사항]

- 중퇴자(졸업하지 않은 사람)는 기간과 관계없이 졸업자로 볼 수 없으며, 따라서 학령에도 포함되지 않음.
-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음.

① 법정 수학연한

- 초등학교: 6년 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9조)
- 중학교: 3년 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2조)
- 고등학교: 3년 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6조)

※ 고등학교 과정 중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은 4년(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)으로 하고 있으나, 호봉획정시 인정하는 학령으로는 3년을 인정

- 특수학교: 동등정도의 교육과정(초·중·고)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함

- 대학교: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

학교별	수학연한	비고
일반대학	4년~6년	의과대학, 한의과대학,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: 6년
산업대학	제한없음	이 표 하단(※)에 따름
교육대학	4년	
전문대학	2년~3년	간호과, 방사선과, 임상병리과, 물리치료과, 치기공과, 작업치료과, 치위생과, 어업과 및 기관과 : 3년
원격대학	2년~4년	전문학사학위과정 : 2년, 학사학위과정 : 4년 ※ 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을 포함
기술대학	2년	전문학사학위과정 : 2년, 학사학위과정 : 2년
기능대학	2년	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
외국대학	2년~6년	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함 ※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. 다만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체결국 간의 확인서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※ 수학연한이 법정되어있지 아니한 고등교육 수학연한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2년(전문학사) 또는 4년(학사) 인정